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대한 설비건설협회(회장 홍평우)에서는 1998년도 원도급자의 부도에 따른 하도급자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현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절차를 신설 및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하여는 가압류 금지조항을 신설토록 국민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함에 따라 지난 98년 12월 18일 국회의원 입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개정 의결되었으며, 1999년 2월 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5816호로 개정되었고, 3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222호로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 의무화(법 제13조)

원사업자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도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동 어음의 지급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화(법 제14조 및 제25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하도급대금의 가압류 금지(법 제14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그 범위내에서 소멸된 것으로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한 제3채권자의 가압류가 금지된다.

[4] 하도급계약서의 직접지급 조건 개선(시행령 제4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조건이 발주자의 판단사항에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로 변경하고,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어길시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

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년 2월 5일)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법내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년 12월 8일)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 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제조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

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년 12월 30일, 1999년 2월 5일)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년 2월 5일)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년 2월 5일)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한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년 1월 5일 법 4860, 1999년 2월 5일)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률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년 12월 8일, 1995년 1월 5일 법 4860, 1996년 12월 30일, 1998년 1월 13일, 1999년 2월 5일)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이자율은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2년 12월 8일, 개정 1999년 2월 5일)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9년 2월 5일)

제25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범위반 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개정 1990년 1월 13일, 1996년 1월 5일 법 4860, 1996년 12월 30일, 1999년 2월 5일)

② 제24조(하도급계약조정협의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가 조정한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년 1월 13일)

③ 삭제(1990년 1월 13일)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년 1월 5일 법 486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 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전문개정 및 제2항 신설 1999년 3월 31일)